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검 토 보 고

〈주소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1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개요	1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4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6
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10
라. 정부 의견	13
3. 조문별 검토	14
가. 총칙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4
나.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및 제6조)	21
다. 주소정보기술 진흥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24
라. 주소정보산업 기반조성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8
마. 주소정보기술 진흥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33
바.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37
사.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안 제23조 및 제24조)	41
아. 보칙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46
자. 벌칙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49
차. 부칙	53

I. 개요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4.
3. 회부연월일 : 2026. 3. 6.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물류·부동산·안전·통계·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AI 등 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안전(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체계확립’의 세부과제에 ‘주소정보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이 선정)과 관련한 핵심 산업임. 그런데, 현재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또한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나. 주소정보기술 진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산업 기반 조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필요한 정보를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소정보산업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조사·연구·개발하고 그 표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 확보와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산업정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정보사업자와의 유사·중복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안 제23조 및 제24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으로 하여, 본칙 제9장¹⁾ 총 33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3장 주소정보기술 진흥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제9조	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제4장 주소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0조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제11조	산업용주소정보 등의 제공 등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	전문인력의 신고 등
제5장 주소정보산업의 지원	제14조	표준화
	제15조	품질인증
	제16조	품질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제17조	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1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조 문		규정사항
제6장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제19조	주소정보사업의 등록
	제20조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
	제21조	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제22조	민간 협력
제7장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제23조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4조	주소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9장 보칙	제25조	자료제공 요청
	제26조	지도·감독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33조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협회의 설립에 다른 경과조치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산업 연구개발, 주소정보산업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품질인증 도입, 주소정보사업자 등록·보호, 주소정보산업 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제정안은 제1장(총칙)부터 제10장(벌칙)까지 있으나, 제8장이 부재함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주소정보산업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최근 발전하고 있는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기술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주소정보산업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행 도로명주소는 개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토지에 부여하는 지번 중심 주소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²⁾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며 도입되었음.³⁾

특히 2017년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범부처 전략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배달점 주소나 실내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산업의 창출을 지원하고, ODA 사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해외에 보급하는 내용의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하여 주소정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2020년에는 사물주소와 상세주소를 도입하여 사물이나 하나의 건물에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산업을 진흥하기

2) 예를 들면 도시 개발 과정에서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거나 여러 지번에 하나의 건물이 건축되는 경우 장소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우편 및 택배 배송이 곤란해 각종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3)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주소체계고도화 및 4차산업창출 시범사업」, 2019.05.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에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정보 활용과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⁴⁾

2022년 수립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은 올해 까지 1조원대 주소정보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주소지능정보 구축, K-주소 브랜드화, 산업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도로명주소법」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

기본방향	추진과제
주소정보 기반시설 확충	- (이동 경로 확충) 현 지상도로 등 16만개 → '26년 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64만개 (4배 확충) - (배달 접점 확충) 현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 → '26년 건물, 사물, 공터 등 1,400만개 (2배 확충) - (주소정보 공개·제공 확대) 현 도로명주소 등 41종 → '26년 이동경로, 접점 등 121종 (3배 확충)
주소정보 부여 확대	- (농어촌지역 도로명 확충)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 2배 확충 - (세입자·사업장마다 개별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미부여 사업장 등 100만건 - (산책로·해수욕장 등 배달존 주소 부여) 야외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개별주소 부여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 (주소지능정보 구축) 드론 배달점 등 11종 → '26년 275종(모빌리티 이동정보 등) - (K-주소 브랜드화) 국내 주소체계의 국제 표준화 및 개발도상국 주소정보산업 진출 지원 - (산업지원 제도 마련) 산업 지원 근거, 사용자 주소 부여 제도 도입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개별 서버 → 클라우드 기반/민원·행정처리의 전산화 - (주소정보 거버넌스 총회 구축) 국가·지자체 및 주소정보위원회(현), 주소기반산업협회(현), 전문가 위원회, 사용자 협의회 등 조직·단체를 참여 - (주소정보 활용기술 개발 R&D 추진) 각 분야별 주소활용 기술 개발·보급

※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주소정보산업을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2026년에는 ‘주소정보 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 43억 8,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2026년 주소정보 산업 지원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6년 예산액	주요 내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8,185	
주소정보 산업 지원	4,384	- 이동지능정보 구축 및 신산업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 주소정보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조사를 통한 기술공유 - 주소정보 통계 조사 -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생성

※자료 : 행정안전부 2026년 확정 예산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소정보산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표준 보급, 품질인증, 해외 진출 지원, 주소정보사업자 등록제, 주소정보산업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임.

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주소정보산업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⁵⁾

주소정보산업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겠음.

특히 현재 국내 주소정보산업 관련 매출은 약 6,7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사업체 중 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⁶⁾, 주소정보산업은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5)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2024년 주소정보산업통계”, 2026.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말 기준 주소정보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는 446개로 관련 매출액은 7,249억원 수준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유사분야인 공간정보산업과 비교할 때 시장 규모는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주소정보산업과 공간정보산업 규모 비교>

(단위 : 개, 억원)

구 분	주소정보산업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	446	5,854
전체 매출액	24,764	257,910
관련 매출액	7,249	112,836
전체 종사자 수	14,869	135,080
관련 종사자 수	4,124	74,067

※자료 : 20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 및 2025년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보고서

또한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20년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여 2021년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부개정 법률 시행 초기에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도로명주소법」에 주소정보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는 산업 진흥을 달성하기 어려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주소정보산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소정보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간정보를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심교통항공(UAM), 자율주행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⁷⁾

특히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2025년 12월 31일 국가데이터처가 주소정보산업의 특수분류를 제정 고시하는 등 주소정보산업의 개념·범위의 정립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주소정보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서 제외되는 산업군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소정보산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정시에는 주소정보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 9일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2026.04.09.

라. 정부 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은 AI·행정·물류 등 국가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자 혁신성장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법·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주소정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소정보는 공간정보의 구성요소로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업은 주소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관련업이 주소정보사업으로 확대해석 될 우려가 있어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은 제명을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으로 하여 주소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또한 “주소정보”, “주소정보산업”, “주소정보사업”,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기술”, “주소정보사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소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 식별과 위치 파악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소정보산업”이란 주소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과 관련된 산업
나. 실내 위치의 안내와 관련된 산업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과 관련된 산업

제 정 안

- 라. 그 밖에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3. “주소정보사업”이란 주소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소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안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에서 주소정보를 구축하는 사업
 - 다. 주소정보의 수집·처리·가공·유통 서비스업
 - 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활용업
 - 마. 주소정보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의 개발·생산·관리 또는 서비스업
 - 바. 그 밖에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
4. “주소정보체계”란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주소정보기술”이란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로서 주소정보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6. “주소정보사업자”란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조) 제정안은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⁸⁾(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와 주소정보와 관련된 인적·물적 식별과 위치 파악, 이동에 필요한 정보로 정의하여 주소정보의 개념을 「도로명주소법」에 비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음.

또한 ‘주소정보산업’을 주소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실내 위치 안내’, ‘사물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주소정보사업’을 ‘주소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 용역업’, ‘측량업 및 해양조사·정보업에서 주소정보를 구축하는 사업’, ‘주소정보 수집·처리·가공·유통 서비스업’,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관리·활용업’, ‘주소정보 제품의 개발·생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함.

8)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혼란·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⁹⁾ ‘주소정보’나 ‘주소정보산업’의 개념이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공간정보’나 ‘공간정보산업’ 등 유사 개념 및 산업의 범위와 중첩되고 이에 따라 규제나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간정보’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규정¹⁰⁾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¹¹⁾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¹²⁾에 따른 공간정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측량업 및 해양조사·정보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 설치·활용업,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제정안과 같이 주소정보의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 외에도 ‘주소정보와 관련된 인적·물적 식별과 위치 파악, 이동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또는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공간정보와 중첩되어, 주소정보산업(사업)과 공간정보산업(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또한 국가데이터처는 주소정보산업과 다른 분야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주소정보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여 주소정보산업을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1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예를 들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측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정보수집업**은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부여·수집·관리하는 산업으로서 ‘기초번호,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를 부여·수집·관리하거나 주소정보 수집’으로 측량을 하는 산업을 포함하나,

공간정보 관련 탐사 및 측량업에 해당되는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항공 촬영업, 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좌표 도면 제작업’은 제외하고 있음.¹⁴⁾

<주소정보산업과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정의 비교>

구분	소분류(코드)	분류 정의	KSIC(코드)
주소정보산업	주소정보 수집업 (211)	건축물, 승강기, 옥외 대피시설, 정류장, 주차장,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부여·수집·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기초번호,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번호를 부여·수집·관리하거나 주소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측량하는 사업체 · (제외)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항공 촬영업, 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좌표 도면 제작 등	측량업 (72921)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3)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 관련 탐사 및 측량업 (420)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측량 및 탐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공간정보 관련 측량활동(공공 측량업, 일반 측량업, 지적 측량업, 측지 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등) · 공간정보 관련 탐사활동(항공 촬영업, 공간영상 도화업, 영상 처리업 등) · 공간정보 관련 조사활동(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등)	측량업 (72921)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3)

14)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 결과」, 2025.12.

따라서 ‘주소정보’의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에 비해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여 ‘주소정보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소정보는 지번정보·지명정보와 함께 특정한 위치의 정보를 표시하여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가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상 공간정보에 해당하여 법체계 상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산업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법」 상 주소정보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소정보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조), 주소정보산업 실태조사,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부문 수요조사, 통계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제 정 안
제2장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산업의 분야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주소정보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

제 정 안

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부문의 수요를 조사(이하 “공공수요조사”라 한다)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안 제5조)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정보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 해당 계획에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간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의 주기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 5,400만원(연평균 7,1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됨.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177	-	-	177	-	354	71

주: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결정되는 지원 대상·지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주소정보기술 진흥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실시 및 연구비 출연·보조(안 제7조), 기술료 징수(안 제8조),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안 제9조)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장 주소정보기술 진흥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협약의 체결 방법과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사업자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

제 정 안
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이후 기술료 징수와 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대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음.

다만,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양도·대여·수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¹⁵⁾에 따른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15) 제정안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은 ‘정부납부기술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체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비 ↓ ↑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비 ↓ ↑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연구개발성과 실시권 ↓ ↑ 기술료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연구개발성과 실시권자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라. 주소정보산업 기반조성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 정 안

제4장 주소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0조(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산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이하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주소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2. 주소정보산업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이하 “기본형 주소산업정보”라 한다)
4. 주소정보와 다른 정보를 융복합한 학습·추론·판단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소정보(이하 “지능형주소산업정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외 활동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에 필요한 국내의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주소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자 등과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용주소정보 등의 제공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는 산업용주소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용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 정 안

우에는 그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산업용주소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

제 정 안

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신고 등) ①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전문인력이 소속된 주소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소정보산업에 필요한 주소정보기술, 산업 동향, 각종 산업정보, 국내외주소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나 단체를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인력 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소정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전문인력 등록제를 도입하면서도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은 주소정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으로 정의할 뿐¹⁶⁾ 전문분야의 범위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록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전문인력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존 입법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문인력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 등이 포함되는데,

중복신고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측량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⁷⁾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주소정보기술 진흥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 정 안

제5장 주소정보산업의 지원

제14조(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이하 “표준화”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의 표준화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이 국제표준기구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사업 수행환경
2. 주소정보사업 수행도구
3. 주소정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그 밖에 주소정보서비스의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소정보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 주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 정 안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주소정보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4.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 관계기관 법인 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4조) 제정안은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주소정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수행의 기초적인 정보이자 드론배송, 자율주행자동차, 로봇배송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이나, 그 형태나 활용방식이 다양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¹⁸⁾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1년부터 주소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한국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우수사례 반영, 주소 국제표준화 관련 보고서 발간 등 관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각종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산업 관련 표준화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주소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제 우편주소 구성요소 및 템플릿 언어’, ‘주소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미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정안은 주소정보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제품 및 서비스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주소정보사업 정보 조사,

18) 김성훈·김보은·원석환, 「주소의 국제표준화 동향분석 및 시사점」, 『지적과 국토정보』, 제52권 제1호,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협약,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규정하며, 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소정보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주소정보사업의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기존 입법례는 건축 설계·시공, 기술사의 설계도서등 작성·제작, 정보보호사업 등 국민의 안전이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거나 교통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측량 등 객관성이 필요한 영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개발 등 지적저작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 적정 대가 또는 대가기준 등을 도입하고 있고,

해당 제도의 취지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등의 품질 저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산업에 대하여도 적정 대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6장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제19조(주소정보사업의 등록) ① 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주소정보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점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소정보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로 등록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제22조(민간 협력)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하여 주소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협력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9조 및 제20조) 제정안은 주소정보사업 등록제도와 주소정보사업자 우선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여 주소정보사업의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주소정보사업 등록요건에 관하여 대강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등록시 필요한 기준이나 요구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주소정보사업 추진시 주소정보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실상 계약 상대방을 주소정보사업자로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고, 이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특수한 기술, 공법, 설비,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실적이나 인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 등이 포함되는데 중복등록·신고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측량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¹⁹⁾

1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주소정보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경우 유사업종이 많은 시장의 특성상 산업계 내 업역 다툼이 우려되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사.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안 제23조 및 제24조)

제 정 안
제7장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제23조(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에 관한 정관의 운영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소정보 관련 법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주소정보와 관련 있는 법인이나 임직원 4. 제24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협회 임직원 ④ 진흥원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조사 3. 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산업용주소정보 등 주소정보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주소정보 관련 품질인증의 지원 7. 제18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도로명주소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

제 정 안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 등은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의 주소정보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 ⑪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주소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소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제안 및 개선 건의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관련 시설물 조사
5. 주소정보산업의 출판·전시·홍보사업
6. 주소정보산업 종사자의 위상 제고 및 상호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관련 시범사업
8.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 정 안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주소정보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3조)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수행 범위, 정부 출연,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위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 중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은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로 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⁰⁾

²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 제24조) 제정안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이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 협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협회의 업무의 범위**에 주소정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소정보시설 관련 시설물 조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에 해당하고,

주소정보산업협회는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업계의 사업자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 수행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에 주소정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겠음.

-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
 -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참고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대한 비용 지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²¹⁾

2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아. 보칙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 정 안
제9장 보칙 제25조(자료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용주소정보의 전국적 통일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 등록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종사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
4. 제15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종사자
5. 제23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임직원
6. 제24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

(안 제25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각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데, 관련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29조) 제정안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등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개발사업, 전문

인력 양성,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①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의 임직원이나 ② 위탁·대행·지정 등을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③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정안은 공적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주소정보산업
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협회의 종사자 및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공무원
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위
탁업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자. 벌칙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 정 안
제10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산업용주소정보를 반출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주소정보사업을 영위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주소정보사업자 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소정보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3조(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초과수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정 안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사업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익을 얻은 자 2. 제17조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은 자의 수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안 제30조 및 제32조) 제정안은 산업용주소정보를 국외로 반출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한 자, 미등록 또는 거짓등록 후 주소정보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사업자의 명의대여와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금지 규정들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적정성과 부과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²²⁾

(안 제33조) 제정안은 품질인증 대가 및 주소정보 관련 용역 대가기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기존 입법례에서 대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저가(低價) 발주가 이루어져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주소정보산업 시장이 특정 공급자나 수요자에 의해 독점적인 시장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의 최종적인 대가가 결정되었더라도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발적인 의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2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불법이익’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차. 부칙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설립에 다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주소기반 산업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대통령령 제정 등 법률 제정 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칙 제2조는 협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면서도 ‘개정규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안은 제정안이므로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 6788-5350

참고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공간정보 관련 제조업 (1)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0)	공간정보 수집·획득·구축·이용을 위한 각종 장비·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 조업
			· 공간정보 수집용 장비 및 기기 제조(거리측정기, GPS 위치확인기, 디지털·아날로그 항공사진 촬영용 카메라 등) · 공간정보 획득용 장비 및 기기 제조(토털스테이션 등 측량기기 및 공간정보 수집·획득 기기,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 기반 측위 장비 등 공간정보 수집 및 획득 장비 등) · 공간정보 구축용 장비 및 기기 제조(라이브 맵핑, MMS, SLAM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구축 기기 등) · 공간정보 활용 장비 및 기기 제조(GPS, 위치추적기, 실내 공간정보 등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정보 이용 기기)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 련 장비 제조업
	공간정보 관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	공간정보 관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0)	공간정보 관련 인쇄물 또는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 활동	18111	경 인쇄업
			· 공간정보 관련 종이 간행물 인쇄(지도, 개발계획도, 국토종합계획도 등의 인쇄물 형태의 지도) · 공간정보 관련 자기 및 광학 기록매체 복제(지도, 계획도, 영상지도, 각종 주제도 등을 담은 디스켓, CD 등의 기록매체 복제 등)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 (2)	공간정보 관련 지도, 서적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21)	공간정보 관련 지도, 서적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210)	공간정보 관련 서적, 일반·전자 지도, 기록매체 복제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도매업 (22)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도매업 (220)	· 공간정보 관련 서적 도매(관련 교재, 사전 및 경제·기술·공학·사회 분야 도서 등) · 일반·전자 지도 도매(위성영상 및 항공영상 촬영물, 지형도, 지적도, 지번도, 국토종합계획도 등) · 공간정보 관련 기록매체 복제물 도매(관련 서적, 일반·전자지도, 주제도 등 공간정보 관련 디스켓, CD 등)	46493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 품 도매업
			· 각종 공간정보 수집·획득·구축·이용 기기 도매(예시는 110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참고)	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 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공간정보 관련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 (23)	공간정보 관련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 (23)	공간정보 관련 전산장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 공간정보 관련 전산장비 도매(관련 각종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용 단말기 등) ·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도매(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3)	공간정보 관련지도,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공간정보 관련 지도,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0)	공간정보 관련 서적 및 일반·전자지도, 기록매체 등을 생산·출판하는 산업활동 · 공간정보 관련 서적 출판(관련 교재, 사전 및 경제·기술·공학·사회 분야 도서 등) · 일반·전자 지도 제작(관련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 생산, 지형도, 지적도, 지번도, 국토종합계획도 제작 등) · 공간정보 관련 기록매체 출판(관련서적, 일반·전자지도, 주제도 등 공간정보 관련 디스켓, CD)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업 (32)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1)	공간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미들웨어, 공간정보시스템(GIS)용 엔진 등을 포함한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 ·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개발(영상처리, 모바일 현장조사, 농지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용 시스템 등) · 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 개발(GIS DB 구축·검수 솔루션, 지형도 자동제작 솔루션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322)	공간정보 활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 등을 통합한 각종 컴퓨터 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 통합, 자문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서비스(열차운영 계획, 차량운용 계획, 급행화 설계 지원 등) ·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 공간정보 관련 컴퓨터 시스템 설계·통합·구축 및 자문(해저지질 정보시스템, 항만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공간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등)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제공 서비스업 (33)	공간정보 관련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업 (331)	유선 및 무선 인터넷에서 포털서비스 및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연계 정보를 서비스하는 산업활동 · 공간정보 활용 포털서비스(호텔, 음식점, 문화재, 랜드마크 위치 찾기 등) · 공간정보 활용 인터넷 서비스(지도 또는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정보 인터넷 서비스, 위치알림 서비스, 분실물 위치검색 서비스, 지도 및 AR 검색지원 서비스 등)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공간정보 관련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32)	공간정보 관련 자료 처리, 가공, 분석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 조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각종 전자매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는 산업활동	63111	자료 처리업
			· 공간정보 관련 자료 처리, 가공 및 분석 서비스 · 공간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지도, 도로 시설물, 도시 계획 등)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가공·제공 서비스(차량 관제 시스템, 위치 기반 PMS 솔루션, 지리정보체계시스템 등)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4)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업 (41)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업 (410)	공간정보 관련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 등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공간정보 관련 기초 자연과학 연구, 관련 전기 및 전자 공학 연구,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연구 등)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공간정보 관련 탐사 및 측량업 (42)	공간정보 관련 탐사 및 측량업 (420)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측량 및 탐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72921	측량업
			· 공간정보 관련 측량활동(공공 측량업, 일반 측량업, 지적 측량업, 측지 측량업, 지하 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등) · 공간정보 관련 탐사활동(항공 촬영업, 공간영상 도화업, 영상 처리업 등) · 공간정보 관련 조사활동(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등)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공간정보 관련 제도 및 지도제작업 (43)	공간정보 관련 제도 및 지도제작업 (430)	일반지도, 전자지도 등을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 활동(직접 지도를 제작하지 않는 출판업은 제외)	72922	제도업
			· 지도 제작(수치 지도, 교통 지도, 해도, 관광 지도 등) · 좌표 등 위치 식별이 가능한 도면 제작 및 수정(도면제작 및 도면 전산화·표준화 등)	72924	지도 제작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4)	공간정보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40)	건물, 토목, 환경 등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공간정보 활용 엔지니어링 서비스(특정 공간 중심으로 도시·사회·환경 관련 문제에 공학적 전문기술을 적용한 종합 검사, 측정, 평가 및 대안 제시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공간정보 관련 교육 서비스업 (5)	공간정보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51)	공간정보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510)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관련 제조 공정 및 각종 기술.이론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관련 고등 교육기관 (52)	공간정보 관련 전문대학 (521)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야 기술 및 직업적 학과내용 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공간정보 관련 대학교 (522)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야 이론적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사.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	85302	대학교
			·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		
		공간정보 관련 대학원 (523)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공간정보 전공분야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85303	대학원
			·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6)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53)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530)	공간정보 분야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산업활동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공간정보 아카데미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6)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 (60)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 (600)	공간정보 관련 산업 및 직업 분야 기업과 회원 이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 공간정보 학술연구 단체(연구원, 학회 등) · 공간정보 산업진흥 단체(진흥원 등) · 공간정보 관련 협회, 협동조합 등		

참고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	주소정보시설 물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1)	도로명판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11)	· (정의) 도로명주소법 제9조에 의해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상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제작하거나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나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도로명판 제조,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판 관리 · (제외)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등 제작, 설치, 관리 등	25994	금속 표지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4219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그 외 주소정보시설물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12)		· (정의) 주소정보 중 건축물, 승강기, 대피시설, 정류장, 주차장 등에 부여되는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제작·설치·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건축물, 승강기, 대피시설, 정류장, 주차장 등에 부여되는 번호 · (제외)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25994	금속 표지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4219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2)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9)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 설치 및 관리업 (190)	· (정의) 도로명주소,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 주소정보를 택배, 자율주행, 드론 등 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발신/수신할 수 있는 부분품을 개발·생산 등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GPS위치확인기, 위치추적기, 실내 공간정보 등 · (제외) 단순 통신장비, 공간정보 수집 및 획득 장비, 공간정보 구축 기기, 항공사진 촬영용 카메라 등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주소정보 수집 및 처리업 (21)	주소정보 수집업 (211)	· (정의) 건축물, 승강기, 옥외 대피시설, 정류장, 주차장,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부여·수집·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기초번호,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번호를 부여·수집·관리하거나 주소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측량하는 사업체 · (제외)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항공 촬영업, 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좌표 도면 제작 등	72921	측량업
				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소정보 처리업 (212)	· (정의) 비정형 원본 주소를 해석하여 표준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와 예전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관 전환하는 등의 '주소전환' 등을 통해 사업 및 정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소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처리·분석하는 등의 서비스를 기획·개발·운영·제공하는 산업 · (포함) 비정형 원본 주소 수집 등 · (제외) 기초번호, 사물번호, 건물번호 등 주소정보 단순수집, GIS DB 구축 등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주소정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 (22)	주소정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 (221)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도로명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주소정보 기반의 운영 시스템, 콘텐츠 등의 솔루션을 기획·개발·운영·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지리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 · (제외) 모바일 현장조사, 지형도 자동제작 솔루션, GIS DB구축·검수 솔루션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주소정보 제공업 (222)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을 정제·전환한 주소정보 혹은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실내 위치 안내 정보를 사업목적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개발·운영·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실내 주소정보 제공, 길 안내,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건물 검색 서비스, 실내 위치 안내 정보 등 · (제외)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정보 인터넷 서비스, 위치알림 서비스, 분실물 위치검색 서비스 등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주소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업 (23)	주소정보 활용 재난 및 안전 시스템 개발업 (231)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 주소정보 기반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실내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구조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기획·개발·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재난안전 DB 연계·구축, 도로·터널·배수구 등 인프라 관리용 위치기반 플랫폼 등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소정보 활용 드론배송 시스템 개발업 (232)	· (정의) 도심 내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 기존 주소체계와 연계한 정밀 입체주소 구축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정밀 입체주소 부여, 입체격자체계 구축, 드론 배달점 주소 부여,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주소정보 활용 로봇배송 시스템 개발업 (233)	· (정의) 실내외 로봇배송을 위해 실내외 이동경로(대형 복합시설, 지하상가, 공공건물 등)의 3차원 이동경로 데이터를 구축·갱신·제공하는 산업 · (포함)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 경로데이터 구축, 3D주소 등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주소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업 (234)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 주소정보 기반 입체적 이동경로 데이터 및 주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자율주차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기획·개발·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주차장·주차면 정보 제공, 지능형 주차 유도 서비스, 사물주소 융합 서비스 등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주소정보 활용 실내 위치 안내 시스템 개발업 (235)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 주소정보 기반의 실내 위치 안내 정보를 사업 목적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기획·개발· 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실내 위치 안내 서비스, 실내 경로 안내 서비스 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등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39. 기타 주소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업 (239)	· (정의) 기초번호, 사물번호, 국가지점번호 등을 수집하거나 정제·전환, 시스템 개발, 주소정보 제공, 드론배송, 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실내 위치 안내 등의 활동 외에 사업목적 및 일상생활에서 기타 주소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운영·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위치정보 요약 DB, 교통·물류 DB 등 · (제외) 주소정보 수집·처리, 주소 정제·전환 서비스, 주소정보 검색 서비스, 도로 시설물 검색 서비스, 드론배송, 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연계 DB, 실내 위치 안내 서비스 등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주소정보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업 (3)	주소정보 관련 연구개발 및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1)	주소정보 관련 연구개발업 (311)	· (정의) 주소지능정보 구축,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연구 등 주소정보산업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표준화,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하는 산업 · (포함) 주소정보 국제표준화, AI플랫폼 개발, 법·제도 개선 등 · (제외) 시스템, 콘텐츠 등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등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12)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12)	· (정의) 주소정보 관련 정책연구, 지원사업 기획·운영 등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및 주소정보 영위사업체 지원 사업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 (포함) 주소기반산업협회,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 (제외) 시스템, 콘텐츠 등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호 행정
				94110	산업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업 (32)	주소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업 (320)	· (정의) 주소정보산업 관련 사업 활동 및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교육하는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기획, 사무, 기술, 프로그래밍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산업 · (포함) 직원 교육기관, 직업 훈련원, 기술공 양성소 등 · (제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85650	직원 훈련기관
				85669	기타 기술 및 직원 훈련 학원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